◎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고시 제2011-58호

답십리제1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34호(2007.11.29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된 답십리동 12번지 일대의 답십리제1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SH공사를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, 동법 동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2011년 7월 28일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명칭 : 답십리제17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대표자 : 서울특별시 SH공사 유민근
4. 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
5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2번지 일대
6. 정비구역의 면적 : 14,151㎡
7.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: 사업시행자 지정일
8. 정비사업의 준공예정일 : 2016년 12월